

문화방송 노조 특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행인: 최성혁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전화: 789-3883~6 팩스: 782-0135

인터넷 홈페이지: www.mbcunion.or.kr

2022년 1월 19일(수)

국민의힘 '불법 방송개입' 법적대응 추진

방송법 제4조 정면 위배... 김기현·박성중·추경호 '사장면담 3인방' 등 형사고발



▲ 언론노조는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의 본사 항의방문에 맞서 제1야당의 방송통제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방송장악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14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십여 명이 대형 전세버스를 타고 MBC로 몰려왔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녹취록' 보도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에 나선 것이다. 버스에서 내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의 거센 저지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몸싸움까지 해가며 MBC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다 상황의 여의치 않자 인원을 줄여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중 국회 과방위 간사 3명만 경찰의 에스코트 속에 MBC 건물에 들어섰다.

언론노조 MBC본부
“부당한 방송장악, 방송법 위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돼 있었지만 실상은 MBC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다. MBC 건물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이들

을 맞이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과 최성혁 MBC본부장 등 1백여 명의 조합원들은 “국회 제1야당 원내 지도부가 보도 간섭을 목적으로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이며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니 그냥 돌아가시라”며 10여 분간 대치를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방송 장악이나 편성 개입의 의도가 없다”며 길을 터 달라고 거듭 말했고, 약속을 받은 조합은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들은 조합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장 면담 과정에서 검은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3인
MBC 사장에 '보도 지시' 외압 행사

김기현, 박성중, 추경호 등 국민의힘 3인방은 박성제 사장은 물론 박준우 보도본부장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대놓고 실력행사에 나섰다. 김건희 녹취록의 검증 과정이나 방

송될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방송 불가'를 주장한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이 불법적 요소를 보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그것도 모자라 박성중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이 담긴 USB를 보도본부장에게 직접 건네며 지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송을 해줄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14일 저녁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꼭 그걸(김건희 녹취록) 방송할 거라면 이재명 후보 욕설 15분짜리도 40분 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방송해라. ((중략)) 그래서 USB를 직접 복사해서 갖다 드렸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 스스로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방송 개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전 국민 앞에 실토한 것이다. 비록 박성제 사장이 “방송 편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여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집단행동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방송 전 보도개입은
헌법 21조 '사전검열'에 해당

MBC를 상대로 한 국민의힘의 협박은 어찌면 예고된 것이었다. 국힘당은 공영언론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에 불리한 기사를 다룰 때마다 습관적으로 편파와 불공정을 외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근 CBS 라디오 프로그램의 토론자 선정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출하며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고, 박성중 의원 등은 YTN '돌발영상'과 뉴스 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며 YTN 사장을 항의 방문해 불만을 표출하고 따지기도 했다. 급기야 MBC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조차 되지 않은 보도를 두고 '방송불가' 내지는 '보도내용 변경 지시' 등의 몰염치한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 '방송 전 보도 개입'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10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이미 방송된 사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앞선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억압으로, 공당의 원내 지도부라는 인사들이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두고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국회 과방위, 문체위 등 유관 상임위원 긴급 '동원령' 내려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부적절한 '동원령'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이름으로 국힘당 의원들에게 긴급 공지 문자를 뿌렸다. 다음날 오전 MBC 항의방문이 있으니 아침 9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계단 앞에 모여 버스에 타라는 내용인데, 그 대상이 원내대표단과 과방위·문체위 위원 전원으로 되어 있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 관련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로서 MBC에게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MBC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과 방통위의 시청자미디어법(가칭)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그런데 지난 14일 박성제 사장에게 직접 USB

를 건네며 보도 지시를 한 장본인이 바로 MBC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박성중 과방위 간사인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MBC에 부당한 외압을 넣어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이미 자당 의원들을 소집하는 첫 공지 문자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방통위원 선임, 방문진 이사 추천권 행사 MBC 사장 선임에도 직간접적 영향 '우월적 지위' 이용한 방송 억압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과방위 간사, 과방위원 등은 관행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이사 선임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해 온 자리이다. 방통위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권을, 방문진 이사는 MBC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MBC 사장과 경영진들의 인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인물들이다. 박성제 사장의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과 발언은 일반적인 항의 그 이상의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항의방문 외에도 얼마든지 헌법과 방송법을 준수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 보도자료나 성명을 낼 수도 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버스까지 대절해 십여명의 국회의원을 단체로 동원하여 방송사에 떼로 몰려왔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방송법 위반 첫 유죄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사건을 기억하는가. 언론노조 KBS본부와 세월호 조사위는 이정현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

고, 검찰은 이 전 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사법부는 이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방송법을 어기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1심 판사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되어 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방송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첫 판례로 남아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사장면담 3인방 등 국민의힘 검찰 고발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국민의힘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방송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발 대상은 실제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에게 방송에 대한 경고와 협박성 주문을 자행한 김기현, 박성중, 추경호 3인방을 포함하여 국민의힘의 불법 동원령과 항의방문에 동참한 원내대표단과 과방위, 문체위 소속 위원 전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 MBC를 황폐화시켰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9년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는 부당한 방송 통제 기도가 반복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조합은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제1야당이 공영방송 MBC에 보장된 방송 편성의 자유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를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똑똑히 알려나가려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을 희망한다. 방송·언론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그 어떤 압력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원칙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긴다.

[알림 - MBC 항의방문]

일시 : 22.1.14(금), 10:15

장소 : 상암 MBC

대상 :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과방위·문체위 위원 전원, 원내부대표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MBC의 도를 넘는 선거개입시도와 편파방송에 대해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관 계단앞(국기계양대앞)에 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1.14) 09시 30분까지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내대표 김기현 드림 -